

의안번호	2218665
의 퇴 인	위성곤의원
회 답 일	2026.5.29.
추계번호	26B245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7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질적인 감축 유도를 위하여 현금, 지역사랑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또는 포인트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 방법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시스템과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2. 승용·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3. 녹색제품 구매, 다회용기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7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의 확산을 위하여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포인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위에 안 제67조제2호 및 제3호를 추가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 제67조제3항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녹색생활·에너지·자동차 등 세 가지 분야로 ‘탄소

중립포인트' 제도를 운영 중임 (참고자료 참조)

[표 1]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현황

구분	시행시기	지급 대상	참여자('26.3월)	'26년 예산(억원)
녹색생활 실천	'22년	17개 실천활동	219만명	181 (국비 100%)
에너지	'09년	전기·수도·도시가스 감축	247만명	99 (지방비 1:1로 별도 매칭)
자동차	'20년	주행거리 감축	9만대	18 (지방비 1:1로 별도 매칭)

주: 에너지 및 자동차 분야의 예산은 지방비를 제외한 국비만을 포함한 것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참고로 2025년 기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은 녹색생활 실천 분야 150억 1,600만원, 에너지 분야 172억 7,800만원, 자동차 분야 26억 2,500만원으로 총 349억 4,400만원임

[표 2] 연도별 인센티브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에너지	자동차	녹색생활 실천	합계
'21년	10,118	336	-	10,475
'22년	13,208	1,801	2,175	17,206
'23년	16,980	2,331	8,950	28,284
'24년	19,332	2,802	14,939	37,097
'25년	17,278	2,625	15,016	34,944

주: 에너지 및 자동차 분야의 인센티브 지급액은 국비와 지방비 모두를 포함한 것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의 추진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1)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③ 정부는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1.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2. 승용·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인센티브의 지급 대상·기준·금액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분담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사항들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는 인센티브 지급 대상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참고자료]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개요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녹색생활 실천, '22~) 14세 이상 국민, 전자영수증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연간 최대 7만원 지급

실천항목 구분	산정금액	실천항목 구분	산정금액
1. 전자영수증 발급	10원/건	10. 미래세대실천행동	기후행동1.5℃ 운영계획
2.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300원/개	11. 공유자전거 이용	100원/km
3. 일회용컵 반환	100원/개	12. 잔반제로 실천	100원/회
4. 리필스테이션 이용	500원/회	13. 나무심기	3,000원/회
5. 다회용기 이용	500원/회	14. 가정용 태양광 설치	10,000원/회
6. 무공해차 대여	100원/km	15.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100원/회
7. 친환경제품 구매	500원/회		
8.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300원/kg	16. 장바구니 이용	50원/회
9. 폐휴대폰 반납	1,000원/개	17. 개인용기 식품 포장	500원/회

- (에너지, '09~) 가구·상업시설, 에너지(전기·수도·가스) 감축률에 따라 연간 최대 개인 10만원, 상업시설 40만원 지급(서울시 제외)
- (자동차, '20~) 비사업용 내연기관차,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 지급(서울시 제외)

○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에너지	자동차	녹색생활 실천	합계
'21년	2,039,857	6,731	—	2,046,609
'22년	2,120,056	43,158	259,065	2,422,301
'23년	2,225,959	52,909	1,043,883	3,322,774
'24년	2,336,523	66,010	1,801,872	4,204,429
'25년	2,443,663	63,672	2,100,004	4,607,364